

배우는 기쁨 ! 나누는 행복 ! 즐거운 우리 !

인사자문위원회 규정



교무기획부

신 가 중 학 교

<http://www.singa.ms.kr>

신가중학교 인사자문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신가중학교 인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위원회는 민주적으로 학교를 경영하고 공정한 교내 인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자문 역할을 담당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단, 인사자문위원회 추천사항과 학교장의 의견이 다를시 충분히 협의하여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1) 부장교사 및 학급담임 임용 규정에 관한 사항
- 2) 부장교사 추천과 담임 임용에 관한 사항
- 3)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 4) 각종 포상 추천에 관한 사항
- 5) 해외 연수와 기타 연수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6)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의뢰한 사항
- 7)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대상자 선정

제2장 조 직

제4조 (구성)

위원은 교감(당연직), 부장교사 2명, 1학년 담임교사 2명, 2학년 담임교사 2명, 3학년 담임교사 2명, 비담임교사 2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제5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맡으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연장자나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간사는 1명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 (자격 및 임기)

1. 위원은 본교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교사 중에서 해당 분야별로 과정별 회의를 통해 선임한다.
2.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하고, 위촉 시기는 3월 중으로 한다.

제8조 (회의소집)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회의를 소집한다.

1.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교무회의 의결이 있을 때

제9조 (의결, 효력)

1.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학교장이 인사에 참고한다.

제10조 (규정에 개폐)

본 규정의 시행 상 개폐의 필요가 있을 때 교무회의 의결을 따르되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3장 부장교사 임용

제11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4항에 의거하여 학교부장교사의 임무, 자격 임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임무)

부장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담한 하며, 매년 말에 업무분담에 대해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1. 교무기획부장 - 학교교육활동평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일과진행, 학교 행사, 학교생활기록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기타 교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2. 교육연구부장 - 교육계획 수립, 연구 계획, 학업성적관리규정, 사정회 운영, 교원 연수 추진, 학생 평가, 교육과정 관련 업무 등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학생생활안전부장 - 학생안전, 학생 복지 및 자치 전반에 관한 사무, 교내·외의 생활 지도, 학교폭력예방지도, 학생회 운영 및 지도, 진로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자연과학부장 - 자연과학교육, 과학실험실관리, 영재교육 및 발명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체육보건부장 - 체육 업무 전반, 보건, 안전교육, 각종 체육행사, 건강기록부관리 등에 관한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6. 교육정보부장 - 교육행정정보 관련 업무 총괄, 학교 종합 전산망 운영, 학교 홈페이지 운영, 학교방송운영, e-러닝 등 교육 정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7. 교육혁신부장 - 혁신학교 관련 업무 총괄, 수업 공개 및 장학 업무, 인문분야관련업무 총괄, 양성평등 관련업무, 시사계기교육, 학부모 독서 토론회 운영, 학부모회 지원, 지역공동체 관련 업무 총괄 및 진행 등 업무를 담당한다.
8. 진로상담부장 - 학교 진로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진로·진학 관련 학생 상담 및 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운영계획 수립 및 진로 관련 에듀팍 관리, 진로 포트폴리오 지도, 커리어넷 등의 진로직업 관련 심리검사의 활용 및 컨설팅, 표준화 검사 등 진로교사 운영 지침 내용 추진
9. 창의체험부장 - 창의적체험활동, 방과 후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10. 1학년부장 - 학년 업무 전반, 수련활동 및 학년 소풍추진, 학년 생활지도, 학년출결관리, 각 학년 급식지도, 환경 및 청소지도 등의 업무 추진 및 총괄한다.
11. 2학년부장 - 학년 업무 전반, 수학여행 및 학년 소풍추진, 학년 생활지도, 학년 출결관리, 각 학년 급식지도, 환경 및 청소지도 등의 업무 추진 및 총괄한다.
12. 3학년부장 - 학년 업무 전반, 수련활동 및 학년 소풍추진, 학년 생활지도, 학년 출결관리, 각 학년 급식지도, 환경 및 청소지도 등의 업무 추진 및 총괄한다.

※ 자세한 업무분담 내용은 학년도 업무 분장표 참조

제13조 (자격)

1. 부장 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라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임용 가능함)
2. 본교 근속연한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단, 희망자가 없거나 학교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는 제외한다.

제14조 (임용)

1. 부장의 임용은 본인이 희망한 자 중에서 인사자문위원회가 순위없이 3인 이내로 복수 추천하고 그 가운데서 적임자를 학교장이 임용하되 가급적 제1희망을 우선하고 희망자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 추천되지 않는 희망자 중에서 임용한다.
2. 부장교사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임용될 수 있으며 같은 부서의 임용은 2년으로 제한한다.
단, 4년 연임할 수 없으나, 희망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장교사 희망원을 제출하지 않는다.
 - 가. 본인이 포기한 자
 - 나. 휴직, 징계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임용제한 기간 중인 자
 - 다. 형사 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자
 - 라. 유예된 교사
4. 부장교사의 희망이 없거나 많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임용한다.
 - 가. 본교 근속 연한이 많은 자
 - 나. 교육 경력이 많은 자
 - 다. 책임감이 강하고 부장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

제4장 학급담임 임용 규정

제15조 (목적)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사랑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담임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임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 향상은 물론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여 교육의 본질 추구와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제16조 (임용 기준)

1. 담임 임용 희망원을 참작하되,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지도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학년을 순환하여 임용한다.
2. 학급담임 희망이 경합일 때는 가급적 교육 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 임용한다.
3. 학급담임 희망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임용한다.
 - 가. 전학년도 비담임교사
 - 나. 전입교사
 - 다. 전학년도 담임교사
 - 라. 신규 임용교사 및 기간제 교사

제5장 교무분장 배정 기준

제17조 (목적)

교사의 적성, 재능, 업무추진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균등하게 교무분장을 배정하여 학교교육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8조 (배정 기준)

1. 본인의 희망을 3지망까지 받아 우선 배정한다.
2. 동일 부서(학년팀, 행정업무팀)에 3년 이상 희망 시 타 부서로 순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동일 분장 업무를 2인 이상 중복 신청시에는 본교 전입순, 호봉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학교에서 실제로 근무한 경력이 30년 이상이고, 만55세 이상인 교사는 업무 배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6장 포상 대상자 추천

제19조 (목적)

교육현장에서 학생 교육을 맡아 헌신, 봉사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교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을 상신함으로써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한다.

제20조 (방침)

1. 인사자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복수 추천한다.
2. 공적심사 기준을 정하여 표창을 상신한다.
3. 공적이 많은 교사에 대하여 가급적 상위 훈격을 추천한다.
4. 연공서열, 승진 예정자 위주의 추천을 가급적 피한다.

제21조 (심사 기준)

1. 추천사유에 해당된 공적을 가지고 있는 교원
2. 확고한 국가관과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며 모범을 보이는 교원
3. 사랑과 봉사로 학생 생활지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교원
4. 평소 경로 호친을 생활화하여 동료 교원 및 지역 주민의 귀감이 된 교원
5. 창의력을 발휘하여 학습지도와 자기 연찬에 부단한 노력을 보이는 교원
6. 질서확립, 불우 청소년 선도, 이웃돕기 등으로 밝은 사회 건설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교원

제7장 연수 대상자 추천

제22조 (목적)

이 규정은 일반연수, 직무연수, 국외 연수 대상자 선정의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 (추천 원칙 및 우선순위)

1. 연수 요건을 갖춘 자
2. 의뢰된 연수 대상자 선정 규정에 적합한 자
3. 연수 목적에 상응하는 공적사실이 현저한 자
4. 연수 대상자가 지정되어 온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교육청에서 배정하는 직무연수 대상자 추천
 - 1) 연수희망자가 많을 경우
 - (1) 1순위 : 3년 이내 동일 연수를 받지 않은 자
 - (2) 2순위 :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자
 - (3) 3순위 : 호봉이 높은 교사
 - 2) 연수희망자가 없을 경우
 - (1) 호봉이 낮은 교사를 우선으로 연번을 정하여 순번제로 지명한다.
 - (2) 연번은 매 학년도마다 새롭게 정한다.

제8장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제24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1항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3항 제4호 및 제4항에 의거하여 본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교원 가산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교원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 (선정위원회 구성과 역할)

매년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교원 가산점 대상자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교원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2. 위원은 4인(위원장 제외)으로 남, 여와 부장, 담임, 비담임을 고려한 교원으로 교직원 회의에서 선출한다.

제26조 (선정위원회 임무)

선정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교원 가산점 대상자 평가 기준 결정한다.
2. 제출된 실적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위원회의 심사위원이 된 교원은 자신의 실적에 대한 심사 평가에서 기피하고, 피평가자가 친족인 경우에는 제척됨)
3. 대상자 선정 결과는 학교장이 결과와 실적을 교원에게 공개한다. (학부모에게는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할 수도 있다.)
4. 학교장으로부터 재심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 사유를 심사하여 선정자를 조정할 수 있다. (선정자 재조정은 선정범위 내에서만 가능)
5. 최종 선정자를 인사자문위원회와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제27조 (대상자 심의)

선정위원회로부터 보고된 최종 선정자는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장이 확정하고 확정된 인원은 해당 학교에 공개한다.

부 칙

1.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필요 사항은 본교 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0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전입한 해부터 기산하여 소급 적용한다.
5. 8장 제24조(부칙) 4항에 ‘전입한 해부터 기산하여 소급 적용한다’ 내용 삭제,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2015년 12월 28일 제 3장 제 12조 부장의 임무 일부개정.
10.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별도의 개정이 없는 한 연도별 시행 일자를 명기하지 아니한다.